

『인천광역시와 일본 코베시』 간의 자매결연안



『인천광역시와 일본 코베시』 간의 자매결연안

의안 번호	977
----------	-----

제출년월일 : 2010. 1.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1868년 개항한 역사성을 가진 일본 유수의 항구도시 코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친 인천 네트워크 확대에 우리시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교통이 발달하여 우리시와 지역여건이 유사
- 의료산업, 나노테크, 항공우주 등 최첨단산업 발달로 시너지효과 창출
- 관광, 컨벤션, 환경, 도시재생,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 교류 효과 기대

□ 주요 추진경위

- '09. 5. 27 : 정무부시장 코베시 방문, 양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최초 제안
- '09. 8. 24 : 코베시 국제추진실장 방인, 자매결연 타당성 조사
- '09. 9. 15 : 코베시 부시장 등 대표단 APCS 참가
- '09. 12. 15 : 코베시 국제문화관광국장 방인, 자매결연체결 실무협의
 -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정식 제안하는 고베시장 친서 전달
 - 2010. 4월 코베시장 방인 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희망

□ 기대효과

- 항만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산업의 입지, 대규모 산업단지 발달, 관광 산업 진흥 등 우리시와 산업 특성이 유사하며 코베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및 경기침체 등 여파를 타파하기 위하여 코베의료산업도시 구상 같은 선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IFEZ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와 산업면에서 상호 보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코베비엔날레, 코베국제플루트콩쿠르, 아시아도시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도시’ 등재 등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완비하고 있어 관광, 컨벤션, 학생 교류, 도시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이 상당함
-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코베 방문 관광객 규모 중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인적 교류, 양국 간 교역 및 직접 투자규모 증가 추세 등 다 방면에서 교류의 실익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

- 자매결연 의회 의결 : 2010. 1월
- 자매결연 체결식 : 2010. 4월

□ 별첨 : 일반현황 및 관련규정

- 일본 코베市 개황 (별첨1)
- 코베市 위치도 (별첨2)
- 양 국가 및 도시 비교 현황 (별첨3)
- 국제자매우호도시현황 (별첨4)
-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별첨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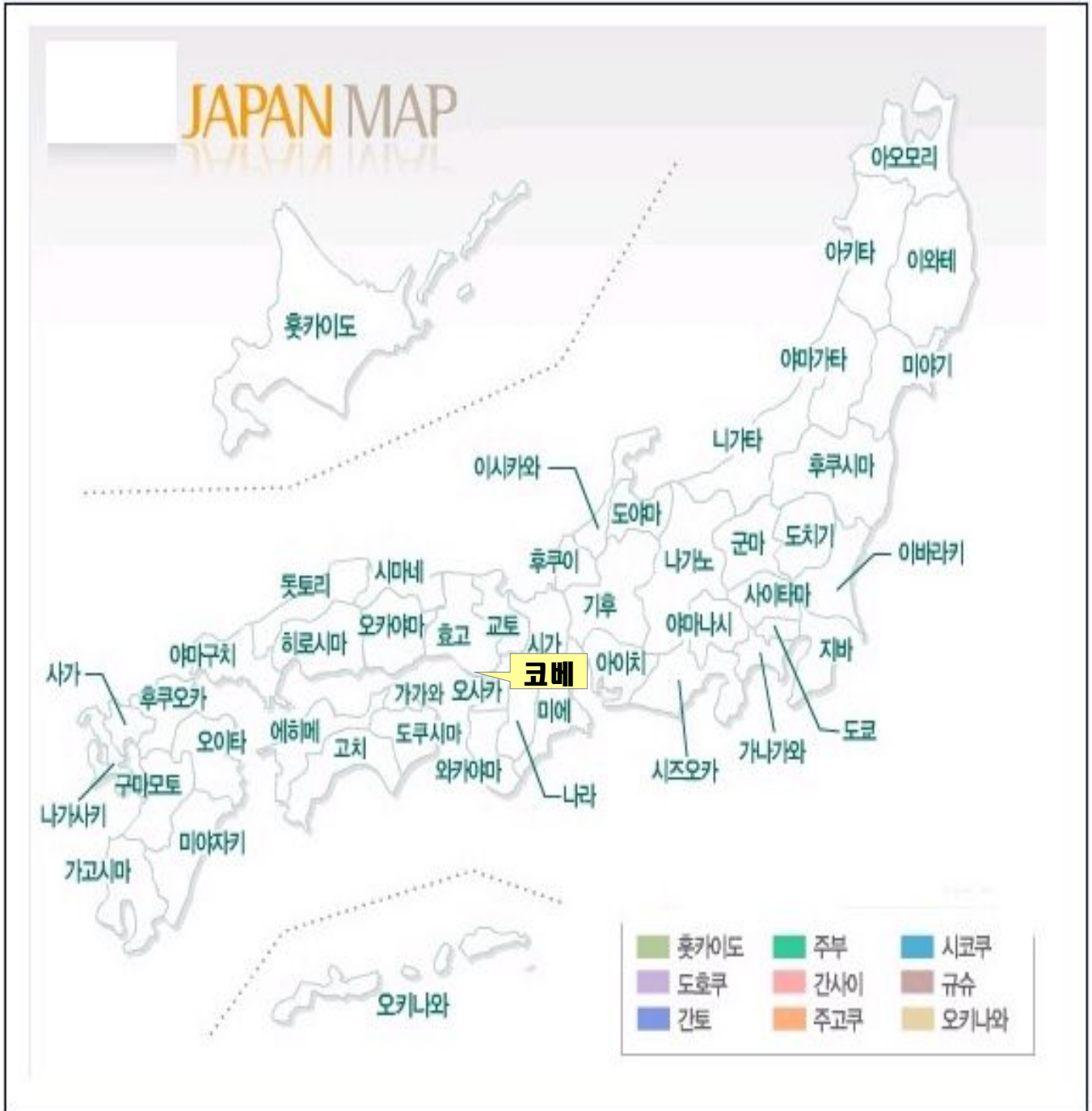
《별첨 1》

일본 코베시(Kobe)시 개황

- **시 장** : 矢田 立郎(야다 타츠오, 1940. 2. 7일생)
- **임 기** : 4년(2009. 11월 취임, 3선째)
- **시 의 원** : 吉田 謙治(요시다 켄지)의장 등 69명
- **인 구** : 1,536,093명(2009.5.1 현재)
 - 외국인 수 : 126개국 44,739명(한국인 수 : 조선인 포함 21,342명, 전체 1위)
- **면 적** : 552.8km²(2009.5.1 현재, 인천 : 1,008km²)
- **위 치** : 오사카 중심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위치, 동서로는 록코산맥, 남부로는 오사카항만을 접하고 있음
- **행정구역** : 9개 구
- **재정규모** : 1조 8천 8십 3억엔(약 24조원, 2009년도)
- **산 업** : 식료품, 철강, 일반기계, 수송 및 전기기계 산업 발달
 - 주요기업 : 카와사키 중공업(주), 미쯔비시 중공업(주), (주)코베제철소, (주)아식스 등
- **교 통** : 코베공항, 코베항 보유, 간사이국제공항 인접
- **도시특색**
 - 1868년 개항한 항구로서 이국적 개항 거리와 온천 등 동서양의 정서가 어우러진 도시
 - 최근 ‘코베의료산업도시구상’ 을 바탕으로 최첨단 의료복지 관련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자매우호도시**
 - 자매우호도시 : 시애틀, 마르세이유, 천진, 리가, 리오데자네이로, 브리즈번, 바르셀로나
 - 친선협력도시 : 필라델피아
 - 자매우호항구 : 시애틀항(미국), 노텔담항(프랑스), 천진항(중국)
 - 관광교류협정 : 테르니(프랑스)

《별첨 2》

코베시(Kobe) 위치도



《별첨3》

양 국가 및 도시 비교 현황

구분	대한민국 (인천)	일본 (코베)	비고
명칭	대한민국	일본	
	인천광역시	코베시	
인구	4,927만명	12,768만명	
	275만명	154만명	
면적	99,720km ²	380,000km ²	
	1,008km ²	552.8km ²	
언어	한국어	일본어	
도시 비교 및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베시는 1868년 개항한 항구도시로서 일본 최초로 지정된 정령지정도시 중의 하나이며 효고현청 소재지임. 면적과 인구는 인천시와 비교할 때 다소 부족하나 인구 면에서 일본 내 6위 도시이며, 외국인 44,739명 중 조선인을 포함한 한국인이 21,342명으로 외국인중 1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코베시 총생산(GRDP)은 6조 201억엔, 1인당 시민소득은 2,932천엔임. 재정규모로는 우리시의 약 3배인 1조8천8십3억엔으로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 공항·항만 보유 및 교통의 발달 등 인천시와 지역 여건이 유사하며 나노테크, 항공우주 등 최첨단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베의료 산업도시구상”을 바탕으로 의료복지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별첨 4》

국제자매우호도시현황

자매도시(16)		우호도시(11)		비고
체결 일시	도시명	체결 일시	도시명	
1961.12.18	미국 버뱅크	1994. 4. 2	중국 대련	
1983. 8.15	미국 필라델피아	1994. 5.11	베네주엘라 차카오	
1986.10. 7	미국 앵커리지	1995. 9.23	중국 단둥	
1988.12.20	일본 기타큐슈	1995. 9.27	중국 청도	
1993.12. 7	중국 천진	2004. 2.16	중국 산둥성	
1997. 7.25	베트남 하이퐁	2004. 3.29	브라질 히오그란지도술주	
2000. 3.16	파나마 파나마	2007. 3.29	중국 연대	
2000. 5.14	이스라엘 텔아비브	2008. 5. 9	필리핀 알바이주	
2000. 5.1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2009. 9.14	대만 타오위엔현	
2003.10.15	미국 호놀룰루	2009.11.10	중국 하얼빈	
2007. 6. 1	중국 중경	2009.12.23	일본 요코하마	
2007.10.15	인도 콜카타			
2008.10. 7	필리핀 마닐라			
2009. 3.27	캄보디아 프놈펜			
2009. 9.14	인도네시아 반튼주			
2009. 9.14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별첨5》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정 1995. 4. 12 조례 제2917호]
[개정 2000. 7. 22 조례 제345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매결연의 체결) ①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0-07-22>

② 자매결연 상대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해 자매결연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5조 (자매결연 체결의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07-22>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상호 교류촉진 등과 관련하여 제반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 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7-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2 조례 제3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